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33호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, 특정용도제한지구, 시계경관지구, 방제지구 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변경 결정(안) 대하여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3.20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을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25일
서울특별시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본 결정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근거하여,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, 타 법령·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지정목적 달성, 지정 취지 상실 및 시대적 여건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임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사항

가.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폐지	①	김포 공항 주변 고도 지구	기본표면 (강서구 일부지역)	1,869,000	1,869,000	-	1977.4.22. (서고 제120호)
			잔이표면 (강서구, 양천구 일부지역)	3,097,000	3,097,000	-	
			진입표면 (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금천구 일부지역)	33,204,000	33,204,000	-	
			수평표면 (강서구, 양천구 일부지역)	29,129,000	29,129,000	-	
			원추표면 (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 일부지역)	12,804,000	12,804,000	-	
			총 계	80,193,000	80,193,000	-	

□ 결정(변경) 사유서

지구명	면적(m ²)	변경 사유
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	80,193,000	- 「공항시설법」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

※ 총면적 80,193,000m²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38호('94.5.6.) 고도지구 결정조서 상 면적임

나. 특정용도제한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□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지구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폐지	①	서울대 주변 특정용도제한지구	관악구 신림동, 봉천동 일대	3,760,400	3,760,400	-	1970.3.17. (건고 제124호)
폐지	②	육사 주변 특정용도제한지구	노원구 공릉동 일대	1,978,000	1,978,000	-	1972.8.14. (건고 제349호)

□ 결정(변경) 사유서

지구명	면적(m ²)	변경 사유
특정용도 제한지구	5,738,400	- 최초 지정이후 시대적 도시개발여건 변화 및 타대학교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제고 -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공간발전구상 계획 반영 ▶ 서울대 주변지역 - 봉천지역중심, 미림지구중심 ▶ 육사 주변지역 - 목동 지구중심 - 「교육환경법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 행위제한 중복규제 및 과다지정 등 실효성 저하로 폐지

다. 시계경관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□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지구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폐지	①	시계경관지구 (신월지구)	양천구 신월동 일대	4,200	4,200	-	1977.12.3 (건고 제235호)
폐지	②	시계경관지구 (시흥지구)	금천구 시흥동 일대	125,567	125,567	-	1977.12.3 (건고 제235호)
폐지	③	시계경관지구 (세곡지구)	송파구 장지동 일대	381,268	381,268	-	1977.12.3 (건고 제235호)

□ 결정(변경) 사유서

지구명	면적(m ²)	변경 사유
시계경관지구	511,035	- 시계지역 도시연담화 방지목적 지정취지 상실 - 소규모 잔여지,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 및 용도지역 등으로 별도 관리중임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폐지

라. 방재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□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지구명	위 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폐지	①	방재지구	노원구 월계동 487-17일대	14,704	14,704	-	2005.4.14. (서공고 제519호)
폐지	②	방재지구	성동구 용답동 108-1일대	73,392.94	73,392.94	-	2006.6.7. (서공고 제900호)
폐지	③	방재지구	구로구 개봉본동 90-22 일대	42,863.01	42,863.01	-	2005.7.14. (서공고 제942호)
폐지	④	방재지구	구로구 개봉본동 138-2일대	31,840.19	31,840.19	-	2006.6.7. (서공고 제901호)
폐지	⑤	방재지구	구로구 개봉본동 133-11일대	45,901.6	45,901.6	-	2006.6.7. (서공고 제902호)

□ 결정(변경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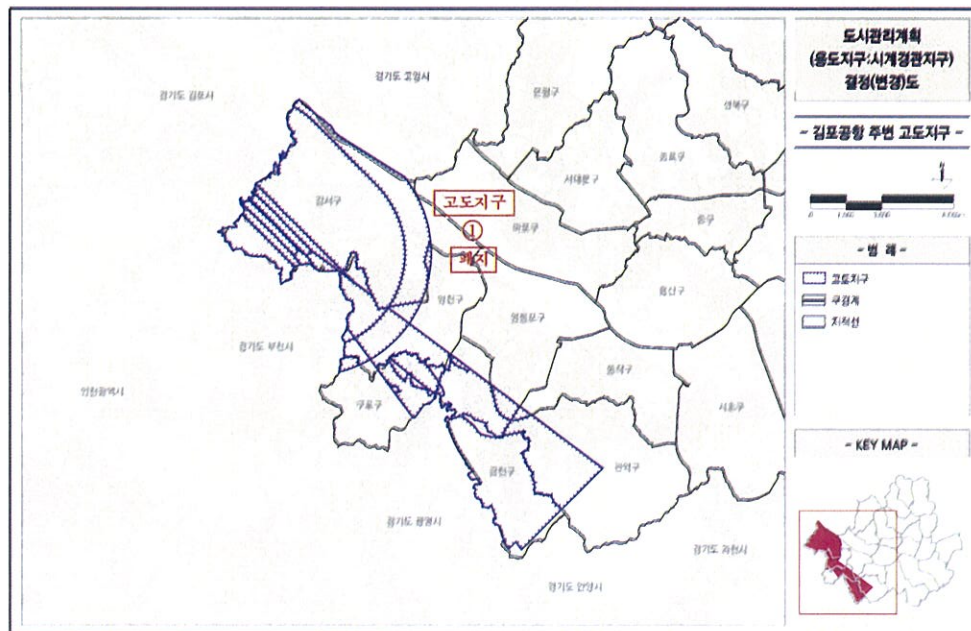
지구명	면적(m ²)	변경 사유
방재지구	208,701.74	- 타 법령에 따라 「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」 및 「풍수해 저감 종합계획」 등으로 방재지구에 대한 풍수해저감 개선 사업 시행 완료 등 풍수해 종합관리 - 당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침수예방 지정목적 달성 및 제도 운영변화에 따라 지정취지 상실 및 실효성 저하로 토지이용 합리화 추진위해 폐지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 및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
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4. 열람 장소 : 시민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(☎02-2133-8333) 또는 성동구 도시계획과(2286-5554), 중랑구 도시개발과(2094-2179), 노원구 도시관리과(2116-3864), 양천구 도시계획과(2620-3503), 강서구 도시계획과(2600-6845), 구로구 도시계획과(860-2955), 금천구 도시계획과(2627-1553), 영등포구 도시계획과(2670-3523), 동작구 도시계획과(820-9596), 관악구 도시계획과(879-6353), 강남구 도시계획과(3423-6103), 송파구 도시계획과(2147-2995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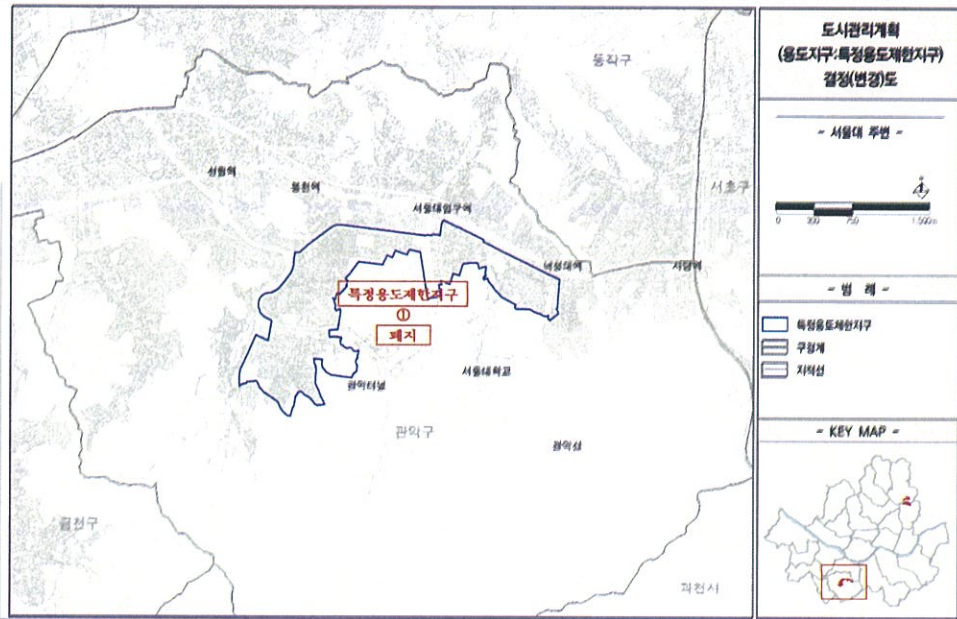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< 첨부도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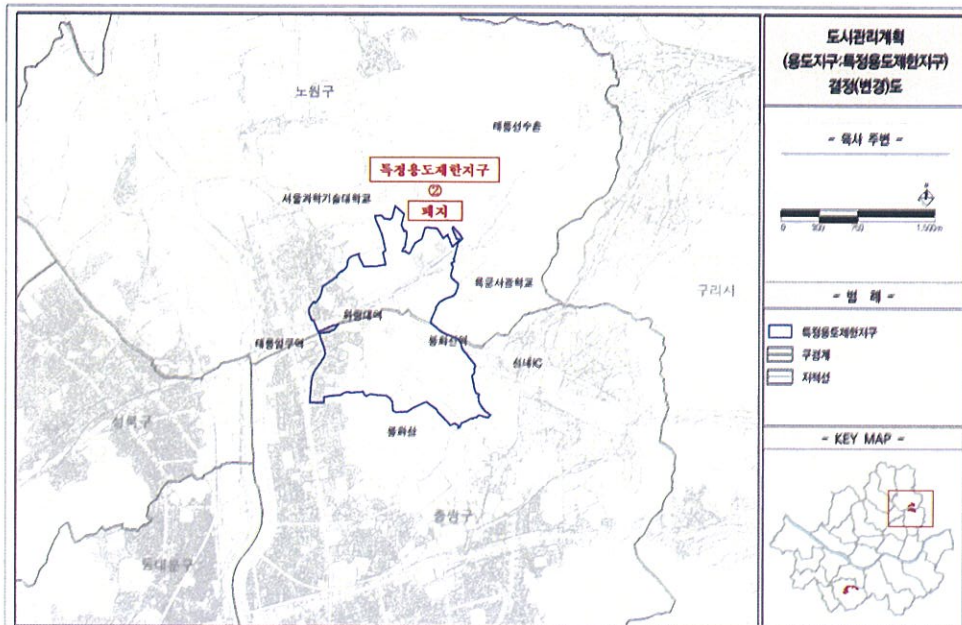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고도지구) 지형도면 고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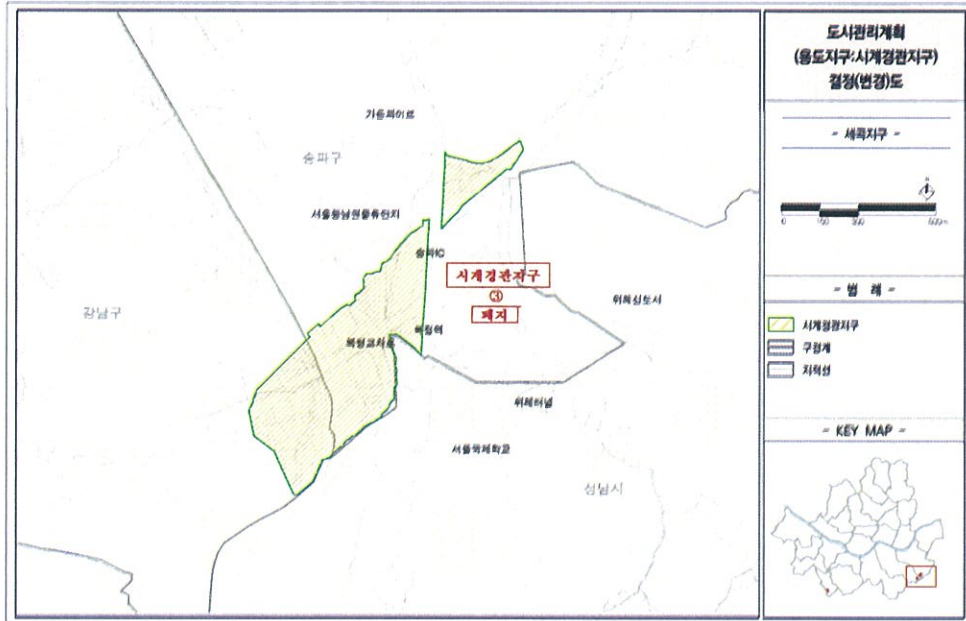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특정용도제한지구) 지형도면 고시도

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특정용도제한지구) 지형도면 고시도

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시계경관지구) 지형도면 고시도



□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방재지구) 지형도면 고시도

